

의안번호	2220519
의 퇴 인	윤후덕 의원
회 답 일	2026.9.28.
추 계 번호	26E398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청년 퇴직연금 납입분
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청년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5,388억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3조 2,694억원(연평균 6,5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(안 제59조의3제1항)	-5,388	-5,910	-6,483	-7,112	-7,801	-32,694	-6,53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3제1항(연금계좌세액공제)	○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- (현행) 총급여액 5,500만원/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시 15%, 초과 시 12% - (개정안) 총급여액 5,500만원/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시 17%, 초과 시 15%. 단, 청년층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 없이 17% 공제율 적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3제1항(연금계좌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 및 소득세 징수기준에 따라 2028~2032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
 -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부터 발생(징수기준)
-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와 청년층 퇴직연금분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나누어 추계한 뒤 합산하여 기준연도(2024 귀속) 세수효과를 산출
- 퇴직연금분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의 효과를 적용받는 청년층은 15~34세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로 가정
 - 개정안은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’에 대하여 공제율 인상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의 일반적인 청년의 연령기준을 적용
- 기준연도 세수효과는 향후 추계기간 동안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2~2025년 연금저축세액공제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 증가율(9.6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

-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공제한도 및 공제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 - 2022년까지는 연령별·소득금액 구간별 차등화된 납입한도를 적용하였으나, 2023년부터는 연령별·소득금액 구간별 납입한도 차등 없이 공제율만 차등 적용
 - 개정안은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 구간은 15%에서 17%로, 초과 구간은 12%에서 15%로 각각 상향 조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17%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

[표 2]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
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공제율	
		현행	개정안
5.5천만원 (4.5천만원) 이하	연간 600만원(900만원)	15%	17%
5.5천만원 (4.5천만원) 초과		12%	15% (단,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 관계없이 17%)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은 2025년 2조 654억원, 2026년 2조 5,751억원(전망) 등으로 나타남

[표 3] 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: 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2	2023	2024	2025	2026p
연금계좌세액공제	15,647	15,428	18,250	20,654	25,751

주: 2026년은 잠정치

자료: 재정경제부,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

나. 추계 방법

(1)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

(나) 근로소득자

-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자료(2024년 귀속)에 따른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공제율이 15%에서 17%로, 5.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공제율이 12%에서 15%로 각각 인상되므로, 인상률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또한 증가하게 됨
 - － 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계해야 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함
 -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을 적용하여 최종 세수효과 산출

[표 4]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근로소득자(2024 귀속연도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	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			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중 (a)	세수효과 - $[C \times (1-a)]$
	현행 (A)	개정안 ($B=A \times$ $17/15$ or $15/12$)	추가공제액 ($C=B-A$)		
1천만 이하	0	0	0	0.0%	0
1.5천만 이하	0	0	0	37.5%	0
2천만 이하	35	40	5	34.1%	-3
3천만 이하	3,717	4,212	496	25.8%	-368
4천만 이하	34,157	38,711	4,554	20.5%	-3,619
4.5천만 이하	43,410	49,198	5,788	20.0%	-4,631
5천만 이하	59,156	67,044	7,887	19.4%	-6,355
5.5천만 이하	67,779	76,816	9,037	18.6%	-7,354
6천만 이하	62,613	78,266	15,653	19.7%	-12,569
8천만 이하	267,330	334,162	66,832	17.6%	-55,093
1억 이하	272,343	340,429	68,086	16.9%	-56,606
2억 이하	522,597	653,246	130,649	20.6%	-103,771
3억 이하	59,355	74,194	14,839	33.7%	-9,844
5억 이하	21,453	26,817	5,363	45.3%	-2,932
10억 이하	7,256	9,071	1,814	56.7%	-786
10억 초과	1,939	2,423	485	75.6%	-118
합 계					-264,049

주: 1.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한 자료임

2.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중복 적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 세수효과 산출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나) 종합소득자

□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(2024년 귀속)에 따른 종합소득금액별 종합소득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공제율이 15%에서 17%로, 4.5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자는 공제율이 12%에서 15%로 각각 인상되므로, 인상률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또한 증가하게 됨

[표 5]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종합소득자(2024 귀속연도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	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			세수효과
	현행	개정안	추가공제액	
	A	$B=A \times 17/15$ (or 15/12)	$C=B-A$	-C
0 이하	2	2	0	0
1천만 이하	2,253	2,554	300	-300
2천만 이하	15,859	17,974	2,115	-2,115
3.5천만 이하	73,754	83,588	9,834	-9,834
4천만 이하	32,799	37,172	4,373	-4,373
4.5천만 이하	32,154	36,441	4,287	-4,287
5천만 이하	24,891	31,113	6,223	-6,223
6천만 이하	47,346	59,183	11,837	-11,837
8천만 이하	81,946	102,432	20,486	-20,486
1억 이하	65,119	81,398	16,280	-16,280
2억 이하	152,910	191,137	38,227	-38,227
3억 이하	40,107	50,134	10,027	-10,027
5억 이하	26,583	33,229	6,646	-6,646
7억 이하	9,066	11,332	2,266	-2,266
10억 이하	5,723	7,153	1,431	-1,431
10억 초과	6,166	7,707	1,541	-1,541
합 계				-135,87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청년층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율 인상

(가) 근로소득자

□ 2025년 연말정산 신고 자료(2024년 귀속)에 따른 총급여 5.5천만원 초과 청년층(15~34세)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분 연금계좌세액공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총급여 5.5천만원 초과 청년층 근로소득자의 연금계좌(퇴직연금, 연금저축)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개정안에 따라 기본적으로 12%에서 15%로 상향
 - 이는 전체 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로,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‘(1)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’에서 추계
- 추가로, 총급여 5.5천만원 초과 청년층 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개정안 기준 15%가 아닌 17% 적용

- 이는 공제율이 현행 기준 12%에서 17%로 인상된 것이며, 12%에서 15%로 인상되어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앞서 추정·반영하였으므로, 이하에서는 15% 대비 17%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
-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퇴직연금분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한 청년층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을 적용
 - 퇴직연금분 공제를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 자료를 습득할 수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한 청년층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을 활용
- 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계해야 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함

[표 6] 청년 퇴직연금분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근로소득자(2024 귀속연도)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	청년 퇴직연금분 공제금액				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비중	세수효과
	현행	개정안		청년 퇴직연금분 추가공제액		
		전체 공제율 인상	청년 퇴직연금분 추가 인상			
	A	B=A×15/12	C=B×17/15	D=C-B	α	-[D×(1-α)]
5.5천만원 초과 6천만 이하	5,196	6,495	7,360	866	15.4%	-733
8천만 이하	16,548	20,684	23,442	2,758	14.6%	-2,356
1억 이하	12,877	16,096	18,242	2,146	13.1%	-1,865
2억 이하	9,336	11,670	13,226	1,556	14.2%	-1,335
3억 이하	454	567	643	76	27.5%	-55
5억 이하	171	213	242	28	39.0%	-17
10억 이하	42	53	60	7	45.2%	-4
10억 초과	9	11	13	1	57.1%	-1
합 계						-6,365

주: 1.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임

2.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의 중복 적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 세수효과 산출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나) 종합소득자

□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(2024년 귀속)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4.5

천만원 초과 청년층(15~34세) 종합소득자의 퇴직연금분 연금계좌세액 공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초과 청년층 종합소득자의 연금계좌(퇴직연금, 연금저축)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개정안에 따라 기본적으로 12%에서 15%로 상향
 - 이는 전체 공제율 인상에 따른 효과로,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‘(1)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인상’에서 추계
- 추가로, 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초과 청년층 종합소득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은 개정안 기준 15%가 아닌 17% 적용
 - 이는 공제율이 현행 기준 12%에서 17%로 인상된 것이며, 12%에서 15%로 인상되어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앞서 추정·반영하였으므로, 이하에서는 15% 대비 17%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

[표 7] 청년 퇴직연금분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종합소득자(2024 귀속연도)
(단위: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	청년 퇴직연금분 공제금액				세수효과
	현행	개정안		청년 퇴직연금분 추가공제액	
		전체 공제율 인상	청년 퇴직연금분 추가 인상		
	A	B=A×15/12	C=B×17/15	D=C-B	-D
4.5천만원 초과 5천만 이하	1,199	1,499	1,699	200	-200
6천만 이하	2,033	2,541	2,880	339	-339
8천만 이하	3,045	3,806	4,314	507	-507
1억 이하	1,756	2,194	2,487	293	-293
2억 이하	2,110	2,637	2,989	352	-352
3억 이하	483	604	684	80	-80
5억 이하	315	394	446	53	-53
7억 이하	103	129	147	17	-17
10억 이하	76	95	107	13	-13
10억 초과	138	172	195	23	-23
합 계	11,258	14,072	15,949	1,876	-1,876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추계 결과

□ (귀속기준) 앞서 추계한 2024 귀속연도 세수효과를 기준으로 향후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2024년 이후 향후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2~2025년 연금저축세액공제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 증가율(9.6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에 따라 개정안에 따라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청년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7년 5,388억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3조 2,694억원(연평균 6,5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(귀속기준)

(단위: 억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	근로소득자	-3,485	-3,823	-4,194	-4,601	-5,047	-21,151	-4,230
	종합소득자	-1,794	-1,967	-2,158	-2,367	-2,597	-10,884	-2,177
청년층 퇴직연금분 공제율 인상	근로소득자	-84	-92	-101	-111	-122	-510	-102
	종합소득자	-25	-27	-30	-33	-36	-150	-30
계		-5,388	-5,910	-6,483	-7,112	-7,801	-32,694	-6,539

□ (징수 기준) 소득세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하면, 개정안에 따라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청년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5,388억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3조 2,694억원(연평균 6,5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2년(징수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상향(안 제59 조의3제1항)	-5,388	-5,910	-6,483	-7,112	-7,801	-32,694	-6,53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